

진도군 문화예술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52
----------	---------

제출연월일 : 2023년 6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진도군 문화예술제의 체계적인 관리와 진도군의 대표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과 기간, 위원회의 정비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개정 전) 진도군 문화예술제 조례
- 개정 후) 진도군 보배섬문화예술제 조례

나. 진도군 문화예술제 조례 목적 변경(안 제1조)

- 보배섬 문화예술제 목적에 맞게 수정

다. 진도군 문화예술제 조례 개최시기 변경(안 제3조)

- 당초 10월 한달간에서 10월 ~ 11월 중으로 변경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변경(안 제7조)

- 당초 관광개발국장에서 부군수로 변경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해당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5. 17. ~ 6. 7.(21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불임(분석평가서 검토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8.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불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6. 8. 원안의결

진도군 문화예술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문화예술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도군 문화예술제 조례”를 “진도군 보배섬문화예술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보전시키기 위하여 연중 산발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통합하여”를 “보전시키고 문화예술발전을 위해”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예술제”를 “보배섬문화예술제”로 한다.

제3조 중 “10월 한 달 간”을 “10월~11월 중”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관광개발국장이”를 “부군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업무담당 국장,”을 “업무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진도군 문화예술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군의 문화예술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전승 보존시키기 위하여 <u>연중 산발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통합하여 개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명칭) 행사의 명칭은 진도군 <u>문화예술제</u>(이하 “문화예술제”라 한다)라 한다.</p> <p>제3조(개최시기) 문화예술제는 매년 <u>10월 한 달 간</u> 개최한다.</p> <p>제6조(행사경비)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u>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u>」에서 정하는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u>관광개발국장</u>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u>진도군 보배섬문화예술제 조례</u></p> <p>제1조(목적) ----- ----- ----- <u>보전시키고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u> ----- ----- -----.</p> <p>제2조(명칭) ----- <u>보배섬문화예술제</u>----- -----.</p> <p>제3조(개최시기) ----- - <u>10월~11월 중</u> -----.</p> <p>제6조(행사경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 -----.</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부군수가</u> ----- ----- -----.</p>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문화예술·관광·축제 업무담당 국장, 과장
2. ~ 4. (생략)

-----.

1. ----- 업무담당
당 -----
2. ~ 4. (현행과 같음)

군민이 주인인 살기좋은 진도



진도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제10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통보

2023년 제10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2023. 6. 8.)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아 래

의안번호	자치법규명	심의결과	소관부서	비고
2023-29	진도군 문화예술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문화예술체육과	서면
2023-30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의결	농수산유통사업단	서면

붙임 심의 의결서 각 1부. 끝.

진도군

수신처 문화예술체육과장 농수산유통사업단장



공부처 유진미 법무의뢰담당 박현주 기획총무실장
 접수 2023. 6. 8. 허수철

발주처

사항 기획홍보상 (211) (2023. 6. 8.) 접수 문화예술체육과-9454 (2023. 6. 8.)

부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설마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3047 팩스번호 061-540-3049 / jindo660@korea.kr / 비공개(5)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머시 온(ON)!

문석권리과장 문화예술체육과-9154 1/1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서

1. 심의결과

번호	제목	신청자	심의요지	심의결과
2023-21	진도군 문화예술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체육과장	○개정이유 - 진도군 문화예술제의 체계적 관리와 진도군의 대표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명칭 - 조례 개화 시기 명칭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명칭	현안이결

위와 같이 의결함

2023. 6. 8.

구분	직	위	성명	가(미)	부(酉)	비고 사	정유 유
의장	군	수	김희수	김희수			
부의장	부	수	우흥섭	우흥섭			
위원	기획홍보실장	허수철	허수철	허수철			
"	인구정책실장	차제남	차제남	차제남			
"	안전생활시위과장	허상무	허상무	허상무			
"	총무과장	허규진	허규진	허규진			
"	새무회계과장	박재천	박재천	박재천			
"	민원봉사과장	허승목	허승목	허승목			
"	수산지원과장	황규용	황규용				
"	진도개축산과장	장경화	장경화				
"	해양항만과장	김창내	김창내				
"	경제에너지과장	이용복	이용복	이용복			
"	주민복지과장	이미예	이미예	이미예			
"	가족행복과장	오승민	오승민	오승민			
"	관광과장	정기문	정기문	정기문			
"	문화예술체육과장	박윤수	박윤수	박윤수			
"	건설과장	박재현	박재현	박재현			
"	도시개발과장	박정현	박정현	박정현			
"	환경수질과장	박병찬	박병찬				
"	산림휴양과장	장재필	장재필	장재필			
"	보건소장	조기주	조기주				
"	농업기술센터장	김상득	김상득				
"	농수산유통사업단장	박남규	박남규	박남규			
"	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영환	김영환				
"	국민해양안전관장	이석찬	이석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근거규정

- 진도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2호

□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작 성 자

- 소속 : 문화예술체육과
- 직급 : 지방행정6급
- 성명 : 곽영신

문화예술체육과장 박윤수(서명)

군인이 주인이 되기위한 진도



진 도 군



수신 문화예술체육과장
(경유)

제목 「진도군 문화예술체 조례」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문화예술체육과 -9184 (2023.06.02.) 호와 관련입니다.
2. 「진도군 문화예술체 조례」 외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진 도 군 수

관인생략

주우편 이순희 / 기획정책팀장 박지현 / 기획정보과장 오승민 / 진영 2023. 6. 2.

주소 문화예술체육과-9184 (2023. 6. 4.)

우 56915 진리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미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1253 / 팩스번호 061-540-0504 / vitamin12@korea.kr / 무료인 공터

대 값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문(ONP)

공시관리과장 문화예술체육과-9184 1/1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 전남진도023		
정책명	진도군 문화예술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부서명	문화예술체육과	
	담당자명	곽영선	전화번호 (061-540-3472)
성별영향평가지 제출날짜	2023년 6월 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예술체육과)	진도군 문화예술제 조례 일부개정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진도군 문화예술제 조례' 와 관련하여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으로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진도군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승희/061-540-1263)			
문화예술체육과장 귀하			



진도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진도군 문화예술제 조례 일부개정(변경)

1. 「진도군 문화예술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홍보실장과 총무과장은 붙임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군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진도군 문화예술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5. 17. ~ 6. 7. / 21일간(변경사유 : 예고기간 내 휴일 산입)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문화예술체육과 예술진흥팀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진도군 문화예술제 조례」 입법예고 1부. 끝

진도군



수신자 기획홍보실장, 인구정책실장, 안전생활지원과장, 총무과장, 기획홍보실장, 민원봉사과장, 수신지원과장, 진도계축전과장, 해양항만과장, 경제에너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기획홍보실장, 관광과장, 문화예술체육과장,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 환경수질과장, 산림휴양과장, 진도군보건소장, 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수산유통사업담당, 시설관리사업소장, 국민해양안전관장, 진도군의회회장, 진도읍장, 군내면장, 고군면장, 의신면장, 암회면장, 지산면장, 조도면장

수무관 **곽영신** 예술진흥팀장 **김연준** 과장
 대결 2023. 5. 17. 문화예술체육과 전과

검조자

시행 문화예술체육과-8173 (2023. 5. 17.) 접수 문화예술체육과-8174 (2023. 5. 17.)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살머길 25, 진도군청 문화예술체육과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3072 팩스번호 061-540-3099 / jindo2009@korea.kr / 대국민 공개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



등록번호	문화예술체육과 -	주무관	예술진흥 팀 장	문화예술 체육과장	부 군 수	군 수	결 재
보조기간	5년	김영선	김현주	이우익	기형상	김종욱	
결재일자							
공개구분	공개	협조	법무의회빙상 박현주		기획홍보실장	이우익	

진도군 문화예술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진도군
(문화예술체육과)

진도군 문화예술제 조례 일부개정 계획

1. 개정의 필요성

- 진도군 문화예술제의 체계적인 관리와 진도군의 대표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과 기간, 위원회 정비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개정 전)진도군 문화예술제 조례
 - (개정 후)진도군 보배섬문화예술제 조례
- 보배섬문화예술제 목적에 맞게 수정(안 제1조)
- 개최시기 변경 (안 제3조)
 - 당초 10월 한달간에서 10월 ~ 11월 중으로 변경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 당초 관광개발국장에서 부군수로 변경

3. 조례(안)

- 붙임

4.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 : 2023. 5월 중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5월 중
- 군의회 안건상정 및 의결 : 2023. 6월 중
- 조례 공포 및 시행 : 2023. 6월 중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3-53
----------	---------

제출연월일 : 2023년 6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진도군 농수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홍보를 강화하고 농어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도명품관 판매장의 목적과 명칭 및 위치(안 제1조 ~ 안 제3조)
- 진도명품관 판매장의 기능(안 제4조)
-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17조)

3. 제정안 : 붙임

4.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5. 10. ~ 5. 30.(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 공문)
-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계획서 : 붙임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6. 8. 원안의결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및 지역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진도군에서 설치한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특산물”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군민이나 법인(또는 단체)이 생산한 농·수·축·임산물, 가공식품, 공산물(공예품, 포장재 등)을 말한다.
2. “진도명품관 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이란 농수특산물을 전시·판매 및 홍보를 위한 판매장 내의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위치) 판매장은 진도읍 남동1길 40-18 진도명품관(1층)에 둔다.

제4조(판매장 기능) 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특산물의 전시·판매 및 홍보
2. 농수특산물의 시장정보 제공
3. 농수특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정보 교환
4.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알선

제5조(판매장 운영)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판매장을 직영하거나,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위원회) ① 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판매장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 허가에 관한 사항
2. 위탁운영에 따른 판매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
3. 판매품목의 선정 및 필요시 판매가격 조정
4. 그 밖의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제8조(위탁 사용 신청) ① 군수는 판매장 사용 허가 만료 30일 전 사용료를 결정하여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에 20일간 공고하고 희망자를 모집한다.

② 희망자는 신청 기한 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 허가 신청이 경합 될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때는 재공고한다.

제9조(위탁 사용 허가) ① 판매장의 사용 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설의 관리는 군수가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 허가서와 사용료 납입 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장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장사용 승인 신청서를 그 기간 만료 9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사용 승인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용 승인을 허가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연장 승인은 1회로 한정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사용 허가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조례가 정지 또는 변경된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3.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 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실금은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 결정) 판매장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제12조(사용료 징수) 사용허가 할 때에 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연도별로 수입 결의하여 미리 징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13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14조(권리양도 제한) 제9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운영관리비)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 시 판매장 사용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과 그 밖의 필요한 운영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매장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금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할 때에는 지도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판매장을 군에서 직영하거나 사용 허가를 할 경우 지도감독관을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지도감독관은 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연 2회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판매장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

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명품관 판매장 위탁 사용 허가서(제9조제2항관련)

신 청 인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0-18		
	지목(구조)	대지	면 적(m ²)	336m ²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 목적	진도명품관 판매장 위탁 운영			
사 용 료	원	사용료 납부 기한	년 월 일까지	
허가조건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 조례 규정 준수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도 군 수 (인)

[별지 제3호서식]

진도명품관 판매장 연장사용 승인 신청서(제9조제4항 관련)

사용 현황	단 체 명 (대표자)		사용료	원
	허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 연장	연장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사유			

※ 첨부 : 사용계획서 1부

수익분석

(단위: 천원)

	투자금액	수 입	지 출	순 수 익	비 고
계					
판매장					
인건비					
운영비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도 군 수 귀하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



진도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제10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통보

2023년 제10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2023. 6. 8.)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의안번호	자 치 법 규 명	심의결과	소관부서	비고
2023-29	진도군 문화예술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문화예술체육과	서면
2023-30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의결	농수산유통사업단	서면

붙임 심의 의결서 각 1부. 끝.

진도군

수신자 문화예술체육과장, 농수산유통사업단장



공무직

유진미

법무의회담당

박현주

기획홍보실장
전래 2023. 6. 8.
허수철

협조자

시행 기획홍보실-7211

(2023. 6. 8.)

접수 농수산유통사업단-2698 (2023. 6. 8.)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현마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640-3047

팩스번호 061-640-3049

/ jindo660@korea.kr

(비공개(5))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번호	제 목	신청자	심 의 요 지	심의결과
2023-30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유통사업단장	○제정이유 - 진도군 농수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통하여 농어가 소득 증대 도모 및 명소화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진도명품관 판매장의 목적 및 기능 - 진도명품관 직접경영 및 위탁경영에 관한 사항	추진안의견

위와 같이 의결함

2023. 6. 8.

구 분	직	위	성 명	가(可)	부(否)	부(否)일 경우 사유
의 장	군	수	김 회 수	김회수		
부 의 장	부	군 수	우 홍 섭	우홍섭		
위 원	기 획 홍 보 실 장		허 수 철	허수철		
"	인 구 정 책 실 장		차 제 남	차제남		
"	안 전 생 활 지 원 과 장		허 상 무	허상무		
"	총 무 과 장		허 규 진	허규진		
"	세 무 회 계 과 장		박 계 천	박계천		
"	민 원 봉 사 과 장		허 승 목	허승목		
"	수 산 지 원 과 장		황 규 응			
"	진 도 개 축 산 과 장		강 경 화			
"	해 양 항 만 과 장		김 창 대	김창대		
"	경 제 에 너 지 과 장		이 용 북			
"	주 민 복 지 과 장		이 미 예	이미예		
"	가 족 행 복 과 장		오 승 민	오승민		
"	관 광 과 장		정 기 문	정기문		
"	문 화 예 술 체 육 과 장		박 윤 수	박윤수		
"	건 설 과 장		박 재 현	박재현		
"	도 시 개 발 과 장		박 정 현	박정현		
"	환 경 수 질 과 장		박 병 찬			
"	산 립 휴 양 과 장		장 재 필	장재필		
"	보 건 소 장		조 기 주			
"	농 업 기 술 센 터 장		김 상 득			
"	농 수 산 유통 사업 단 장		박 남 규	박남규		
"	시 설 관 리 사업 소 장		김 영 환			
"	국 민 해 양 안 전 관 장		이 석 찬			

비 용 추 계 서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안)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관련조문

- 진도명품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나. 비용 발생 요인

- 판매장 공공운영비, 여비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에 따라 판매장 공공운영경비, 홍보비 등 아래와 같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추계됨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출	116	116	116	116	116	580
위원회 수당·여비	5	5	5	5	5	25
판매장 공공운영비	111	111	111	111	111	555

다. 자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총 계		116	116	116	116	116	58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도비)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16	116	116	116	116	580
	지방세	116	116	116	116	116	58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3. 작성자

- 소속 : 농수산유통사업단
- 직급 : 지방행정8급
- 성명 : 김주은

농수산유통사업단장 박 남 규 



진도군



수신 농수산유통사업단장
(경유)

제목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농수산유통사업단-2249(2023.5.10.) 호와 관련입니다.
2.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하오니, 그 반영계획서를 **2023. 5. 30. (화)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영계획서 제출방법(GIA 시스템)

1.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성별영향평가대기 > 나의과제 - 검토의견통보서의 상태값인 [통보 (개선)] 클릭
2. 검토의견통보서의 개선의견 내용을 확인 후 오른쪽 하단의 「반영계획서 작성」 단추를 클릭하여 반영 계획 및 결과 작성 후 저장
3. 저장 단추 오른쪽의 기안 단추를 클릭하여 체크리스트 (성별영향평가서) 기안 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안 결재 진행

※ 시스템 사용 문의 :

GIA시스템 콜센터 (T. 02-3789-4450)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진 도 군 수

관인생략

공무직 이은하 가족정책팀장 박지현 가족행복과장 오승민
전감 2023. 5. 16.
협조자

시행 가족행복과-20046 (2023. 5. 16.) 접수 농수산업통시업단-2363 (2023. 5. 16.)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1265 팩스번호 061-540-0504 / leh13315@korea.kr / 대국민 공개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전남진도021		
정책명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부서명	농수산유통사업단	
	담당자명	김주은	전화번호 061-540-114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5월 1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농수산유통사업 단)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 <input type="checkbox"/>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7조(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 지표 3. 성별균형 참여에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 등 명칭 불문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해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 기관을 말함)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본 조례에서는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위원회 기능을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고 명시하였음. 그러나 해당 조례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균형 참여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input type="checkbox"/> 따라서 본 조례의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을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하되, 해당 조문에 성별균형 참여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명시해 줄 필요가 있음.		
	구분	해당 내용	개선안

	(제·개정 법령안)	(법령 수정안)	
	<p>제7조(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위원회) ① 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p>	<p>제7조(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위원회) ① 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가 대신하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균형 참여를 고려하도록 한다.</p>	
<p>검토의견 반영계획서</p>	2023년 5월 30일 까지		
<p>「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05월 16일</p> <p style="text-align: center;">진도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이은하/061-540-1265)</p> <p>농수산유통사업단장 귀하</p>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



진도군



수신 가족행복과장
(경유)

제목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제출

가족행복과-20046(2023.5.16.)호와 관련하여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1부. 끝.

진도군수

주무관	김주은	온라인판매지	원팀장	송원영	농수산유통사	전결 2023. 6. 1.
					업단장	박남규

협조자

시행 농수산유통사업단-2601 접수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1142 팩스번호 061-540-0506 / wndms265@korea.kr / 대국민 공개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3A 전남진도021			
정책명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부서명	농수산유통사업단		
	담당자명	김주은	전화번호	061-540-1142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p>○ 본 조례에서는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위원회 기능을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고 명시하였음. 그러나 해당 조례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p> <p>○ 따라서 본 조례의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을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하되, 해당 조문에 성별균형 참여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명시해 줄 필요가 있음.</p> <p>제7조(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위원회) ① 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가 대신하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균형 참여를 고려하도록 한다.</p>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불수용	<p>○ 본 조례의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위원회'는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고 명시하였음.</p> <p>○ 본 조례에서 타 조례의 조문인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함.</p> <p>○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p> <p>○ 따라서, 해당 의견은 불수용 통보함.</p>
--	---	---

2023년 05월 19일

농수산유통사업단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진도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기획홍보실장과 총무과장은 붙임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군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자치법규명 :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예고기간 : 2023. 5. 10. ~ 5. 30. / 20일간
-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 라. 의견제출 : 농수산유통사업단 온라인판매지원팀(☎061-540-1142)

-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부. 끝.

진도군수

수신자 노, 로, 도

주무관	김주은	온라인판매지원팀장	송원영	농수산유통사업단장	박남규
-----	-----	-----------	-----	-----------	-----

협조자

시행 농수산유통사업단-2267 접수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미길 25, 진도군청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1142 팩스번호 061-540-0506 / wndms265@korea.kr / 대국민 공개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문서번호	농수산유통사업단	담당자	온라인판매 지원팀장	농수산유통 사업단장	부군수	군수님	결 재
보존기간	3년						
결재일자	2023. 4. 5. 9.	김주은	홍승영	박현주	이항섭	이종욱	
공개구분	대국민공개	협조	법무의회팀장	박현주	기획홍보실장	이우진	

홍리양 이주진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 조례 제정 계획


진도군
 (농수산유통사업단)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 조례 제정 계획

1 제정 이유

-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을 전시 및 판매하여 농어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명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진도명품관 판매장의 목적 및 위치(안 제1조 ~ 안 제3조)
- 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6조)
-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7조)

3 제 정 조 례 안

- 붙임 1

4 향후 추진일정

- 2023년 5월 : 입법예고
- 2023년 5월 : 조례규칙심의회
- 2023년 6월 : 의회 의결 및 조례 공포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2023-54
----------	---------

제출연월일 : 2023년 6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청

2. 의안내용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붙임

2022 회계연도 결산 개요

1. 세입세출의 결산(일반회계, 특별회계)

○ 세 입

- 예산현액 : 678,536,162,499원
- 수납액 : 760,821,515,621원

○ 세 출

- 예산현액 : 678,536,162,499원
- 지출액 : 514,021,129,636원

○ 결산상 잉여금

- 결산상잉여금 : 246,800,385,985원
- 이월액 : 112,448,471,262원
 - 명시이월 : 77,059,057,620원
 - 사고이월 : 35,389,413,642원
- 보조금집행잔액 : 12,895,752,229원
- 순세계잉여금 : 121,456,162,494원

2. 예비비 결산

- 예비비 예산액 : 2,566,263,000원
- 지출결정액 : 2,421,263,000원
- 지출액 : 2,193,321,090원
- 잔액 : 227,941,910원

3. 기금 결산

- 전년도말 조성액 : 19,349,049,601원
- 당해년도 조성액 : 2,318,857,467원
- 당해년도 사용액 : 897,295,410원
- 당년도말 조성액 : 20,770,611,658원

4.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채 권 액 : 3,482,574,052원
- 채 무 액 : 69,960,000원
 - 일반회계 차입금 : 69,960,000원

5. 재산 결산

- 재 산 액 : 1,080,531,446,572원
 - 행정 재산 : 367,020,485,692원
 - 일반 재산 : 29,543,557,959원
 - 건설중인재산 : 683,967,402,921원

6.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 세입세출외현금 : 2,906,539,991원
 - 보 증 금 : 183,923,550원
 - 보 관 금 : 2,717,280,877원
 - 기 타 : 5,335,564원

7. 우리군의 재정현황(재무보고서)

- 재정상태
 - 총 자 산 : 2,265,220,669,625원
 - 총 부 채 : 25,473,283,808원
 - 순 자 산 : 2,239,747,385,817원
- 재정운영
 - 수 익 : 533,894,480,686원
 - 비 용 : 454,873,632,901원
 - 운 영 차 액 : 79,020,847,785원

